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  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  
전문위원 이금성

#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41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4. 10.
- 회 부 일 : 2026. 4. 10.

## 2. 제안이유

- 조례상 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을 현행화\*하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\* 금산선유원(구 금산문화의집) 준공(2025. 7.)

## 3. 주요내용

-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 현행화(안 제2조)
- 용어의 정비(안 제3조)
- 금산군 문화의 집 무료개방 원칙임을 명시(안 제6조)
- 개방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7조~제9조)
- 사용료 납부 및 반환, 감면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~제11조)
- 휴관일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○ 예산조치 : 시설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사업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○ 기타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2655)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2642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7179)
- 입법예고(2026. 2. 10. ~ 2026. 3. 3.) : 제출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7월 준공된 금산선유원의 명칭을 반영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- 안 제2조는 일반적인 ‘문화의 집’ 대신 ‘금산선유원’ 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거점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. 다만 주민들에게 기존 문화의 집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·제10조·제11조는 ‘2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사용료 납부’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긍정적이나, 노쇼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9조는 정치·종교 활동이나 영리 목적 사용 시 취소·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중립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.
- 안 제19조는 휴관일 규정을 관공서 공휴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, 군수의 별도 지정 시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여 주민 불편을 줄였다고 판단됨.

- 다만, 본 개정안에서의 ‘사용료 납부 및 반환 조항 자체를 삭제’ 하여 시설 노후화 시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균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, 시설 사용 10일 전 신청, 5일 전 변경으로 매우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정하고 있어, 긴급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.